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332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18. 2. 2.
4. 회부일자 : 2018. 2. 5.

II. 제안이유

-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교육자치 및 행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정책 수요와 지역현안 수요 등을 포함하여 2018년 총액인건비 기준 인원을 증원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1. 정원의 총수 증원 (안 제2조): 증 130명

- 본청 · 교육지원청 ·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증원
: 증 105명(6,648명 → 6,753명)
- 교육전문직원 정원 증원
: 증 25명(460명 → 485명)

2.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증원 (안 제4조 관련 [별표 3])

- 총계 증원: 증 130명 (7,113명 → 7,243명)
 - 일반직 정원 증원: 증 105명 (6,650명 → 6,755명)
 - 5급 이하 소계: 증 105명 (6,569명 → 6,674명)
 - 특정직 정원 증원: 증 25명 (460명 → 485명)
 -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 증 25명 (410명 → 435명)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의안 [별첨 2] 참고.
3. 기 타 :
 - 신·구조문 대비표 : 의안 [별첨 1] 참고.
 - 입법예고(2018. 1. 19. ~ 1. 26.) : 의견 없음.
 -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18년 2월 2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 2332호로 제출되어 2018년 2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2018년 총액인건비에 따라 일반직·특정직공무원의 기준인원이 증원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2018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에 따른 정원(안 제2조)

- 교육부가 통보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18년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는 5,273억 8천 2백만원으로, 일반직공무원의 총액인건비는 4,762억 9천 7백만원이고 특정직공무원은 510억 8천 5백만원입니다(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5428, 2017.10.20.).

이는 2017년도 총액인건비 4,969억 5천 9백만원(일반직 4,489억 6천 5백만원, 특정직 479억 9천 4백만원) 보다 304억 2천 3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교육부 통보에 따를 경우 2018년 지방공무원 정원은 2017년 보다 일반직은 106명, 특정직은 9명 증가하게 됩니다.

- 그러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8년 총액인건비 관련 교육전문직원 소요 정원 증원 계획(안)」(중등교육과-37936, 2017.12.6)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계획(안)」(행정관리담당과-671, 2018.1.19) 그리고 「2018년 교육전문직원 정원 증원 배치(안)」(중등교육과-2329, 2018.1.25)을 수립하여 2018년 총액인건비 범위에서 [표]와 같이 일반직은 교육부 통보보다 1명을 감축한 105명으로 하고¹⁾ 특정직은 교육부 통보보다 16

명 증원하는 것으로 하여 동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표1] 2018년 총액인건비에 따른 증원 내역

(단위: 명)

| 구분 | 일반직공무원 | 특정직공무원(교육전문직원) |
|----------------------|------------|----------------|
|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증가 | 106 | 9 |
| 국가정책수요(A) | 17 | 7 |
| 지역수요(B) | 36 | - |
| 자체수요(C) | 52 | 18 |
| 증원인원(D=A+B+C) | 105 | 25 |

○ 이에 따라 동 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와 [별표3]에서 일반직을 기존 6,648명에서 6,753명으로, 특정직을 460명에서 485명으로 조정하는 등 지방공무원 총수를 기존의 7,113명보다 130명 증가한 7,24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통보에 따른 사후조치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15조에2) 따라 총액인건비 범위에서 정원을 관리하는 것인바, 조례

1) 감축된 1명은 이미 제277회 정례회에서 증원한 교육공간기획추진단(4급) 정원임.

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총액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교육행정기관은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총액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총액인건비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 운영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총액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정원의 관리)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그 조사·확인 결과를 기관별·기구별·종류별·직렬별·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특정직(교육전문직원) 증원에 대한 검토

- 한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특정직 증원과 관련하여 위 [표1]과 같이 교육부의 총액인건비 기준액인 9명보다 16명이 더 증원된 25명을 반영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4년 이래로 [표2]와 같이 특정직 정원이 교육부 총액인건비 산정 기준인원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460명으로 동결해 옴에 따라 각종 핵심 교육정책사업의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밝힌바 있습니다.

[표2] 특정직 정원 변동 내역

(단위: 명)

|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 교육부 총액인건비 산정 기준인원 (결원보충 포함) | 468 | 471 | 472 | 467 |
| 교육전문직 정원 | 460 | 460 | 460 | 460 |

또한 이에 따른 인건비 배분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계획(안)」(행정관리담당과-671, 2018.1.19)에 따라 [표3]와 같이 특정직 인건비 단가를 교육부 통보액인 1억 7백만원보다 4백만원 적은 1억 3백만원(2017년 총액인건비 집행액 기준)으로 산정하여 총액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4개월분의 인건비만 반영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2018.9.1 임용예정).

2.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표3] 2018년 특정직 총액인건비 비교(교육청 산출 VS 교육부 통보)

(단위: 명, 천원)

| 구분 | 특정직(교육전문직) | 비고 |
|-------------------------|-------------|-------------------------------------|
| 정원(A) | 460 | ○ 2018.1.1 |
| 파견/공로연수(B) | 14 | ○ '2018년 총액인건비 기초자료' 교육부 제출(2017.8) |
| 증원(C) | 25 | |
| 인건비 계상인원 (D=A+B+C) | 499 | |
| 2018년 인건비 단가(E) | 103,274 | |
| 교육청 산출 총액인건비 (F=D×E) | ①51,533,726 | ○ 25명 증원시 1년 인건비 |
| | ②49,812,493 | ○ 25명 증원시 4개월 인건비 |
| 교육부 통보 총액인건비 (G) | 51,085,272 | |
| 차이(H=F-G) | ①-448,454 | ○ 1년 인건비 반영시 교육부 통보액 초과 |
| | ②1,272,779 | |

○ 그러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계획(안)」(행정관리담당관-671, 2018.1.19)에서 밝힌 바와 같이 특정직 25명의 임용예정일이 2018년 9월 1일이라는 점에서 특정직 증원이 교육정책사업의 긴급한 추진 필요성에 따른 조치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법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2.29.] [대통령령 제28521호, 2017.12.29., 타법개정]

제4조(총액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교육행정기관은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총액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총액인건비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 운영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총액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정원의 관리)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그 조사·확인 결과를 기관별·기구별·종류별·직렬별·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
2.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거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제15조의2(정원 책정의 승인) ① 교육감은 일반직 4급 이상의 정원을 책정하려는 경우(정원 증가가 없는 경우 및 직렬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정원 책정의 적정성 및 해당 직위의 직무 분석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될 수 있는 교육전문직원(「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서 교육감에 소속된 교육전문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원을 책정하려는 경우(정원 증가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정원 책정의 적정성 및 해당 직위의 직무 분석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청의 과장·담당관 이상
2. 교육지원청의 국장 이상

3. 직속기관의 부서장(일반직 4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보직되는 직위로 한정한다) 이상

제20조(정원의 규정) ① 시·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정원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②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1. 5급 이하 직급별 정원
2.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
3. 교육전문직원 중 제1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교육전문직원을 제외한 정원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④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